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</p> <p>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. 다만,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</p> <p>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금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.</p> <p>1. 부 또는 모</p> <p>2. 부모의 사망·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</p>	<p>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</p> <p>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금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.</p>

<신설>

-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.

상 가정이 된다.

1.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썩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세 거주하는 경우
2.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세 거주하는 경우

1.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썩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세 거주하는 경우
2.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세 거주하는 경우

제4조(지원기준)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추하급을 지원하되,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**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**에 지급한다.

1. 넷째 자녀: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
2. 다섯째 자녀 이상: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

<신설>

제4조(지원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**제3조제2항의 경우 2년제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부터 1년 후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**

제5조(지원신청) ①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. 다만, 제3조 제2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.

- ② (생략)
-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.

제5조(지원신청) ①

제5조(지원신청) ①

신청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. 다만, 제3조 제2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.

- ② (생략)
-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입양한 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산축하금은 **2020년 1월 1일 이후** 출생 또는 입양한 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신청) ①

신청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. 다만, 제3조 제2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.

- ② (생략)
-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 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**2019년 1월 1일 이후** 출생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.